##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개인정보보호법위반·배

## 임수재·배임증재·변호사법위반방조

[수원지방법원 2013. 1. 2. 2012고합545]

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 최두헌(기소, 공판)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김중식 외 4인

## 【주문】

1

피고인 1, 2를 각 징역 1년 6월에, 피고인 3을 벌금 7,000,000원에, 피고인 4, 5를 각 벌금 5,000,000원에, 피고인 6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.

피고인 3, 4, 5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2, 6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1708호 압수조서의 목록 순번 4, 5번을 피고인 2, 4로부터 각 몰수한다.

피고인 1로부터 24,100,000원을 추징한다.

피고인 3, 4, 5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.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